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58
----------	------

2021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2일, 김인제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인제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 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 조례의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 김인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758호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한자로 되어 있는 일부 조문을 한글화하고,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 및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치며,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정리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는 입법 의도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표-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9판), 국민 의견조사¹⁾

구분	비율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매우 많다.	30.4%
어려움을 겪은 적이 조금 있다.	52.1%
어려움을 겪은 적이 별로 없다.	15.1%
어려움을 겪은 적이 전혀 없다.	2.4%

1) 법제처 홈페이지(moleg.go.kr) : 정비기준 및 자료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 p.8 용어정비의 중요성)

[표-2] 202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설문 순위²⁾

순위	행정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용어	용어	용어
1	개호 → 간병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상병급여 → 부상 및 질병급여
2	고아원 → 보육원	명기 → 명확히 기록	풍치 → 경관
3	애로사항 → 고충사항	저리 → 저금리	구제 → 제거
4	절취선 → 자르는 선	지불 → 지급	장의비 → 장례비
5	전주 → 전봇대	잔고 → 잔액	추월 → 앞지르기

- 동 조례안은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3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당해”, “기타의”, “명기하여야”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 “해당”, “그 밖의”,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등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용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 제8조에 대한 검토

2) 법제처 홈페이지(moleg.go.kr) : 공지사항(공고 제2021-95호)

○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 안 제8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1.9.30. 일부개정)로 개정되어 제6조제2항제4호의 해당 내용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미 정비가 되어있어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 제13조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3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사항이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739, 2021.10.15.).

○ 그러나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이 아직 위원회 심의 전으로, 심의 결과 동 조례안이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통과될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이 다른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두 개정조례안 간의 조문이 서로 상충하고 있지 않아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안 제8조를 삭제함.

Ⅶ.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58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I. 수정이유

-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례안 제8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난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되면서 제6조제2항제4호의 해당 조문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미 정비가 되어있어 삭제가 필요함.

II. 주요내용

- 안 제8조를 삭제함.

III.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u>제8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 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p> <p><u>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u></p> <p><u>제9조~제13조 (생략)</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u>제8조~제12조 (조례안과 같음)</u></p>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전단 및 후단과 제15조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 및 제7조제7호와 같은 조 제1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2조제2항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명기하는”을 “분명하게 기록하는”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